

2026년 「해양수산 기술인증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」 모집 연장공고

해양수산 우수 인증기술의 상용화 및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「해양수산 기술인증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」에 참여할 해양수산 분야 우수 인증기술 보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1 사업개요

□ **사업목적:** 해양수산분야에서 인증된 우수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제품개발, 양산 준비 및 성능 검증 지원으로 시장진출 활성화

□ **사업기간:** 2026. 8. ~ 2027. 1.

* 지원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은 약 6개월이며,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**지원규모:** 총 5개사 내외, 총 1억 원

○ 기업당 최대 2,000만원 지원(공급가액 기준, 부가세 제외)

○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

* 정부지원금:기업매칭금은 8:2로 지원금 2,000만원 신청시 500만원 매칭 필수

□ **지원내용:** 인증기술의 제품화 및 현장적용 지원

○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 제작기반 구축, 제품 검증 및 현장 실증 등 기술의 제품화에 필요한 제반 비용

구분	지원 내용	비고
기반 구축	• 금형 및 공정 설계, 자동화 설비 개발 및 개선 등	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항목을 제안 가능
제품 검증	• 평가방법 개발, 시험·평가, 품질검사, 해외인증 취득 등	
현장 실증	• 테스트베드 설치·실험 및 트랙레코드 확보 등	
기타 비용	• 제품 디자인·포장, 제품화 컨설팅, 판로개척비 등	

* 판매하는 제품의 제작·생산 비용은 지원 제외하며 인건비, 간접비 집행 불가

□ **성과목표:** 지원사업을 통한 성과지표별 목표 제시 필요

○ (필수지표) 매출액(또는 구매·계약실적 등), 고용창출 실적, 제품 판로 개척 실적 및 기타 제품화 인증 신청 등*

- * 신기술 인증기업의 경우 신기술 적용제품·시설 확인제도의 제품확인 신청 필수
- *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업의 경우 별도 문의
- * 녹색기술 인증기업의 경우 녹색제품 인증 신청 필수

- (권장지표) KOLAS(한국인정기구) 시험성적서, 현장실증 확인서, 개발제품 관련 우수 인증 획득(혁신제품 지정, 우수조달물품 및 이에 준하는 공인 인증), 기술가치평가 수행(신청), 국내외 포상·수상 실적 등
 - * 권장지표 목표 설정 시 우대
- 기타 기업별 인증기술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·목표 제시 필요

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, 신청 시 유의사항

□ 신청자격

-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·이전받아 시장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
 - * (대상인증) 해양수산신기술(NET), 물류신기술등 지정, 해양수산부에서 인증받은 녹색기술
 - ** 단,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한 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, 혁신제품 지정, 녹색제품 인증 등을 받거나 제품개발이 완료된 경우는 신청 제외

□ 제외 대상 :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- 동일(유사)한 아이템(기술)으로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
-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*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*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65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를 기준으로 함

3 신청·접수방법

☐ 신청기간: 2026. 7. 20.(월) ~ 7. 27.(월) 17:00까지

* 신청 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**접수 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 서류를 모두 등록**하여야 함

☐ 신청방법: 해양수산 R&D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(<https://badabom.go.kr>) 신청서류 전산 접수

☐ 제출서류

연번	신청 서류	비고
①	사업 신청서, 사업계획서	필수 제출
②	사업참여 약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	
③	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	
④	중소기업 확인서	
⑤	최근년도('23~'25년)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본	
⑥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
⑦	해양수산분야 기술 인증서 (신기술 인증서,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서, 녹색기술인증서)	해당시 제출
⑧	기타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, 인증서, 시험성적서 등	
⑨	기타 가점 증빙자료	

*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될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
□ 선정절차

○ 사전검토→서류평가→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지원기업 선정

- (사전검토)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단계별 자격요건 확인

* ①접수 후 신청서류 여부확인 ②서류평가 후 세부자격요건, 제외대상 검토

** ①신청서류 미제출, ②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 조치하며, 후순위 기업 선정함(기타 특이사항은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)

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(2배수) 선정

* 지원 대상기업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

- (발표평가)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별 점수 산정

<서류·발표평가 운영>

-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, 평가위원회 종합 평가점수 (최고, 최저 제외 산술평균)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

[평가항목 및 배점]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(20)	■ 경영 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, 개발역량 등)	10
	■ 국내·외 시장파악 수준, 판로 확보 및 네트워킹 등	10
인증기술 우수성 (30)	■ 대상 인증기술과 적용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	15
	■ 기존 기술·제품과의 차별성, 독창성 및 성장가능성	15
인증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(40)	■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및 판로개척·확대 가능성	20
	■ 추진 목표(성과지표·목표)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	20
사업비 적절성 (10)	■ 사업비 구성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	10

- (가점사항) 가점항목에 따라 발표평가(최종 선정평가)에서 가점 부여

가점 항목	제출서류(필수)	가점 규모
○ 해양수산 우수기술 이전지원 사업 기술거래 기업	기술거래 확인서	1점
○ 해양수산 수요기술 이전지원 사업 기술거래 기업	기술거래 확인서	
○ 해양수산 기술가치평가 수행기업	해양수산 기술가치평가서	

□ 선정 일정

선정절차	일정	세부내용
신청서 접수	7/1~7/27(17시)	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
↓		
자격요건검토	7월 5주	신청자격, 제외 대상, 제출서류 등 검토
↓		
서류평가	8월 1주	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(합격자 개별 통보)
↓		
발표평가	8월 2주	대표자 발표평가(합격자 개별 통보)
↓		
최종선정	8월 중	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

*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사업 추진일정

절차	일정	세부내용
협약체결	8월 3주	사업계획서 수정, 협약체결 및 기업 간담회 개최
↓		
사업비 지급	8월 4주	사업비계좌 개설,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사업비 지급
↓		
사업수행	8월 3주~1월 3주	진도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
↓		
최종평가	1월 4주	결과보고서 및 성과 자료(증빙 포함) 제출 및 발표평가
↓		
사업비 정산	2월 1주	자체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기반 정산서류 재검토

*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지원금 지급

- 사업비 전용계좌 기업매칭금액 입금 및 이행(지급)보증보험 발급 확인 후 협약체결, 지원금(100%) 선지급
- 기술 제품화를 위한 시험, 인증, 실증 등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비 사용내역은 자체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
 - * 진흥원에서 별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사업수행 실패 및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진흥원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지원기업은 협약 종료 후, 2년 간 매출액, 고용창출, 사업화 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- 타부처 지원사업(자금지원)에 동일·유사한 아이템(주제)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* 사업종료 이후에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전액 환수 조치함

□ 선정자의 의무사항

-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사업문의 등

구분	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지원 기관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	김설아	02-3460-0391	ksa519@kimst.re.kr